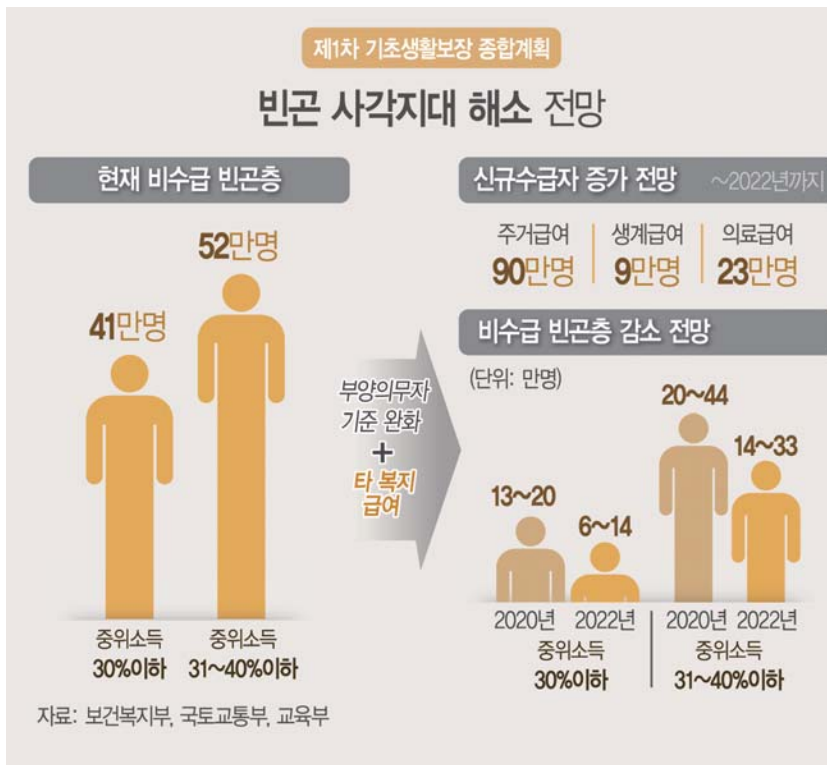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老-老' 부양 등 4.1만가구 혜택

### 복지부 내달부터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장애인 부양하는 '장-장 부양'도 의무자 대상 배제 20세 이하 등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 관계없이 적용 제외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나 '장애인 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가 포함된 경우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급'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 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매년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해당해야 한다.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애초에 도입 당시에는 전통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를 집 지운다는 측면이 감안됐지만 가족 해체가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내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약 90만명(68만 가구)가 추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2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

는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3단계 폐지가 시행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은 2018~2022년 6만6000명(누적 기준), 의료급여 대상은 같은 기간 18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선 보장대상, 생계급여 탈락자까지 확대...이자소득 공제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가정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취약계층 우선보호대

상'으로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 해외이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면서 주거용 재산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다만 현행 인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로 돼 있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확대하고 이들의 심의를 의무화해 수

급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와 청년층 근로소득공

### 기초수급 꼭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통해 적극 보호 청년층 대학생-비대학생간 근로소득 공제액 차별도 시정

제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들이 자립을 위해 고금리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저소득과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면 기준에 받던 것보다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 저해 요소가

있따라 발생 중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 90만4280가구중 3.5%(3만1489가구)가 이자소득이 발생해 월평균 2만1325만원이 감액되는 처지다. 평균 생계급여(42만9000원)의 약 5%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학생과 비대학생간 근로소득 공제 차별도 이번엔 시정된다.

그동안 대학생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30만원, 비대학생(24세 이하 청년층)은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하게 40만원으로 통합된다.

공제액을 넘은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뉴시스

지역공감 마케팅조성본지원

**湖南新聞** 전판 O62/224-5800

팩스 O62/222-5548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